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18

# 광 주 고 등 법 원

## 제 1 행 정 부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2019누11612 경정거부처분취소 |
| 원고, 항소인 | 주식회사 A |
| |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 |
| | 담당변호사 [redacted] |
| |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 |
| 피고, 피항소인 | [redacted]구청장 |
| 제 1 심 판 결 | 광주지방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9구단10217 판결 |
| 변 론 종 결 | 2019. 9. 26. |
| 판 결 선 고 | 2019. 10. 24. |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7. 23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, 농어촌특별세,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18

지방교육세 합계 97,106,000원을 66,707,6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**[고쳐 쓰는 부분]**

○ 4쪽 4행부터 8행까지의 '②항'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「② '원시취득'은 '새롭게 발생한 권리를 가지는 것'을, '승계취득'은 '이미 발생한 타인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'을 각 의미하므로, '승계취득'의 경우 이미 발생한 권리에 존재하는 하자나 제한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지만, '원시취득'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그런데 부동산 경매 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고,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(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내지 5항) 경매신청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경매를 통하여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. 이러한 점에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.」

○ 5쪽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'⑤항'을 추가한다.

「⑤ 원고는 민사법의 해석을 적용하여 '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18

승계취득에 해당한다'고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런데 구 지방세법은 '승계취득'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조 등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, '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'에 관하여 명시적인 세율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, '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'이 구 지방세법상 '승계취득' 또는 '원시취득'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민사법상 개념에 따라 확정할 수밖에 없다. 또한 법령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은 합목적적 해석에 해당할 뿐,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.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, 구 지방세법 제11조의 취지, 문언 및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, 위 '승계취득'을 민사법상 개념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.」

## 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인규

판사 김성주

판사 박정훈